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94

발의연월일: 2024. 8. 13.

발 의 자: 안규백・박지원・이기헌

안태준 • 이성윤 • 서미화

김영환 · 임광현 · 김준혁
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, 지적장애인,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, 이들에 대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 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 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.

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,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,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(안 제1조, 제2조 및 제3조 등).
- 나.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시 스템 입력 대상에 실종성인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8조의2 및 제11 조).
- 다.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를 추가 함(안 제13조제2항).
- 라.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한다.

제1조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등과"를 "실종자와"로 한다.

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종 전의 제3호) 단서 중 "제4호의"를 "제6호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(종 전의 제4호) 중 "아동등을"을 "보호가 필요한 사람을"로 한다.

- 3. "실종성인"이란 소재(所在) 또는 생사(生死)를 알지 못하고 비자 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귀가(歸家)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4. "실종자"란 실종아동등 및 실종성인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 과 경찰청장"으로,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1 호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 아동등과"를 "실종자와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7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"실종아동등에"를 "실종자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한다.

제3조의2의 제목 중 "실종아동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"을 "실종자주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실종아동등에"를 "실종자에"로, "아동의 실종을"을 "실종의 발생을"로, "실종아동의"를 각각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으로"를 "실종자주간으로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실종아동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"을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실종아동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주간"을 "실종자주간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실종아동등에"를 "실종자에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임을"을 "실종자임을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 항 중 "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, "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한다. 제7조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"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"을 "경찰청장은 실종자를"로,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, "전문기관·경찰청·지방자치단체·보호시설"을 "전문기관·지방자치단체·보호시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한다.

제8조의2의 제목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실종아동등에"를 "실종자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실종아동 등의"를 각각 "실종자의"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, "실종아동등의" 를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실종아동등의"를 각각 "실 종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실종아동등을"을 각각 "실종자를" 로 한다.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의 제목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의"를 각각 "실종자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호자에게"를 "보호자 및 실종성인의 가족에게"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"실종아동등"을 각각 "실종자"로한다.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3의 제목 중 "공개 수색·수사 체계의"를 "실종아동등의 공

개 수색・수사 체계"로 한다.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4의 제목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복지부장관"을 "경찰청장"으로,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며, 같은항 제2호·제4호 및 제6호 중 "실종아동등"을 각각 "실종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이"를 "실종자가"로,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이"를 "실종자가"로,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"실종아동등"을 각각 "실종자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보호자가"를 "연고가 명확하지 않은 성인이나보호자가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무연고아동"을 "무연고자"로 하며, 같은 조제3항 중 "실종아동등인지"를 "실종자인지"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하였을 때

제15조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,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한다.

제16조 전단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한다.

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실종아동등을"을 각각 "실종자를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실종아동등과"를 "실종자와"로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"실종자의"로 하고, 같은 항제4호 중 "실종아동등에"를 "실종자에"로 하며, 같은 항제5호·제6호·제7호·제8호 및 제9호 중 "실종아동등의"를 각각 "실종자의"로 한다.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제17조제1호·제2호 및 제3호 중 "실종아동등을"을 각각 "실종자 를"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2년"을 "3년"으로, "2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실종아동등을"을 "실종자를"로 한다. 제19조제1항제1호 중 "실종아동등"을 "실종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10을 삭제한다.

제39조의11제2항을 삭제한다.

제55조의4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61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6호 중 "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 을 "「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바목 중 "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④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2항제3호 중 "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"를 "「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가목"으로 한다.

제3조(실종노인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「노인복지법」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종된 노인과 관련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실종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법률 제1조(목적) 이 법은 실종아동등 제1조(목적) -----실종자의---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 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 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자<u>와</u>-----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실종성인"이란 소재(所在) <신 설> 또는 생사(生死)를 알지 못하 고 비자발적인 원인에 의하 여 귀가(歸家)하지 못하는 것 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실종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다. 4. "실종자"란 실종아동등 및 <신 설> 실종성인을 말한다.

- 3. "보호자"란 친권자, 후견인 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.
- 4. "보호시설"이란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・신고 등이 없이 <u>아동등을</u> 보호하 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.

<u>5.</u> ~ <u>7.</u> (생 략)

- 제3조(국가의 책무) ① <u>보건복지</u> <u>부장관</u>은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생예 방, 조속한 발견·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 다.
 -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 립 및 시행
 - 2. <u>실종아동등과</u>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

<u>5</u>	
	<u>제6호의</u>
<u>6</u>	
	<u>보호가 필요한</u>
	사람을
7	· ~ <u>9.</u> (현행 제5호부터 제7
ŊО	호까지와 같음)
	조(국가의 책무) ① <u>보건복지</u>
<u> </u>	<u> '장관과 경찰청장</u> <u>실종자의</u> -
-	
_	
-	
_	
1	<u> 실종자를</u>
2	. 실종자와

- 5.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
- 6. <u>실종아동등의</u>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 비스 제공
- 7. 그 밖에 <u>실종아동등의</u>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경찰청장은 <u>실종아동등의</u>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 야 한다.
-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
 의 구축 및 운영
- 2.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
- 3. (생략)
- 4. 그 밖에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(생 략)
- 제3조의2(<u>실종아동의</u> 날과 <u>실종</u> 지 <u>아동주간</u>) ① <u>실종아동등에</u> 대 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<u>아</u> 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년 5월 25일을 <u>실종아동의</u> 날로 하고, <u>실종아동의</u> 날부터

3. <u>실용사의</u>
4. (현행과 같음)
5. 실종자의
6. 실종자의
7 <u>실종자의</u>
② <u>실종자의</u>
1. <u>실종자에</u>
2. <u>실종자의</u>
3. (현행과 같음)
4 <u>실종자의</u>
③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2(<u>실종자의</u> 날과 <u>실종자</u>
<u>주간</u>) ① <u>실종자에</u>
<u>실종의 발</u>
<u>생을</u>
<u>실종자의</u>
- <u>실종자의</u> <u>실</u>

1주간을	<u>실종아동주간으로</u>	한
다.		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실</u> <u>종아동의</u> 날과 <u>실종아동주간의</u>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·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<u>실종아동의</u> 날과 <u>실종아동주간</u> 관련 행사 ·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<u>실종</u>
 <u>아동등에</u> 관하여 다른 법률에
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
 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
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<u>실종아동등</u> 관련 업무 위 탁) ① · ② (생 략)

제6조(신고의무 등)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신고체계(이하 "경찰신고체계"라 한다)로 지체 없이 신고하

종자주간으로
② <u>실</u> 종자우간의
제6조(신고의무 등) ①
<u>실</u> <u>종자임을</u>

여야 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업무·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<u>아동등을</u> 보호·감독하는 사람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<u>아동등을</u> 보호조 치할 때에는 <u>아동등의</u> 신상을 기록한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 경찰신고체계로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③ ~ ⑥ (생 략)
- 제7조(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<u>실</u> <u>종아동등을</u>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.
- 제8조(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 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을 신속하게 발견하 기 위하여 실종아동등의 신상 정보를 작성, 취득, 저장, 송신 ·수신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전문기관·경찰청·지방자치단 체·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(이하 "정보연

.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실종자를</u>
②
<u>실종자를</u>
실종자의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7조(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) -
<u>실</u>
<u>종자를</u>
제8조(정보연계시스템 등의 구축
·운영) ① <u>경찰청장은 실종자</u>
<u> </u>
<u>실종자의</u>
전문기관·지방
자치단체·보호시설

계시스템"이리	· 한다)를	구축•
운영하여야 현	난다.	

- ② 전문기관의 장은 <u>실종아동</u>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제6조제 3항 및 제4항에 따라 받은 신 상카드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 스를 구축・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~ ⑥ (생 략)
- 제8조의2(<u>실종아동등</u> 신고·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· 운영) ① 경찰청장은 <u>실종아동</u>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 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 -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제8조제 1항에 따라 구축·운영 중인 정보연계시스템을 「사회복지 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축·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(생 략)

② <u>실종자를</u> -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조의2(<u>실종자</u> 신고·발견을
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・운
영) ① <u>실종자에</u>
,
② <u>실종자의</u>
실종자의
<u>.</u>
③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) 제9조(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)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 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 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<u>등</u>(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조 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「위 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 른 개인위치정보, 「인터넷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 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「통 신비밀보호법 | 제2조제11호마 목 ·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(이하 "개인위치정보등"이 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「통신비밀 보호법」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세9소(누색 또는 누사	의 실시 궁
①	<u>실종자의</u> -
	·
②	<u>실종자</u>
<u>실</u> 종	<u> 자의</u>
	.

- 1. ~ 4. (생략)
-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,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경찰관서와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(생략)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9조의2(<u>실종아동등</u> 발견을 위 제한 정보 제공 요청 등) ① 경 찰관서의 장은 <u>실종아동등의</u>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(그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③
<u>실종자의</u>
- <u>실종자의</u>
4
<u>실종</u>
자를
<u>실종자</u>
르 <u></u>
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
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9조의2(<u>실종자</u> 발견을 위한 정
보 제공 요청 등) ①
<u>실종자의</u>

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)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」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)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법인・단체의 장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 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경찰관서의 장은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
-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 등의 <u>보호자에게</u>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<u>실종자의</u>
1. ~ 4. (현행과 같음)
2
<u>실종자를</u>
3
보호자 및 실종성인의 가족
에게

- 1. <u>실종아동등</u>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
- 2.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실종아동등 발견 업무 이외 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

④ (생략)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9조의3(<u>공개 수색·수사 체계</u> 의 구축·운영) ① ~ ④ (생 략)
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9조의4(<u>실종아동등</u> 조기발견 지침 등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</u>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 설에서 <u>실종아동등을</u> 빨리 발 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<u>실종아동등</u> 발 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

1. <u>실종자</u>
2
<i>-</i> -실종자
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
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9조의3(<u>실종아동등의 공개 수</u>
<u>색・수사 체계</u> 구축・운영) ①
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
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9조의4(<u>실종자</u> 조기발견 지침
등) ① <u>경찰청장</u>
<u>실종자를</u>
<u>실종자</u>

침(이하 "<u>실종아동등</u> 조기발견 지침"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- 1. (생략)
- 실종아동등 발생 상황 전파
 와 경보발령 절차
- 3. (생략)
- 4. <u>실종아동등</u> 미발견 시 경찰 신고 절차
- 5. (생략)
- 6. 그 밖에 <u>실종아동등</u> 발생예 방과 찾기에 관한 사항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·장소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
 ·장소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"관리 주체"라 한다)는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등 조 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, 수색,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1. ~ 12. (생 략)
-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시설·장소의 종사자에게 <u>실종</u> <u>아동등</u>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

<u>실종자</u>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실종자</u>
3. (현행과 같음)
4. 실종자
5. (현행과 같음)
6실종자
②
실종자가
실종자
<u></u>
1 19 (청체코 가용)
1. ~ 12. (현행과 같음)
3
<u>실종자</u>

교육·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<u>실종</u> 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 되도록 제2항에 따른 조치와 제3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실 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 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10조(출입·조사 등) ① 경찰청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이나 아동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수 있다.

②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·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반하게 할 수 있다.

	④ <u>실종</u>
	<u> </u>
	 .
	⑤ (현행과 같음)
저	10조(출입·조사 등) ①
,	
	<u>실종자의</u>
	·
	②
	<u>실종자의</u>
	<u>.</u>

③ (생략)

- 제11조(유전자검사의 실시)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(이하 "검사대상물"이라 한다)을 채취할 수 있다.
 - 1.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「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 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등
 - 2. <u>실종아동등을</u> 찾고자 하는 가족
 - 3. 그 밖에 보호시설의 입소자 였던 무연고아동
 - ② (생 략)
 -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 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

③ (현행과 같음)
세11조(유전자검사의 실시) ①
실종자의
·
1
1
<u>연고가</u>
명확하지 않은 성인이나 보
<u>호자가</u>
2. 실종자를
3
무연고자
<u>기 단구 기</u> ② (현행과 같음)
3
3
<u>실종자인지</u>

후에 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제12조(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<u>실종아</u> 동등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 외 의 용도로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물을 채취하거나 유전자검 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.

② (생략)

- 제13조(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 의 폐기) ① (생 략)
 - ②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
<신 설>

- 2. ~ 3. (생 략)
- ③ ④ (생 략)
- 제15조(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)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<u>실종아동등의</u> 신상정보를 <u>실종아동등을</u>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16조(관계 기관의 협조) 보건복 제2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2조(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등) ① <u>실종자</u>
를
<u>ਦ</u>
<u>,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
의 폐기) ① (현행과 같음)
2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실종성인의 소재를 확인
하였을 때
2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
금지)
<u>실종자의</u> 실종
자를
<u>기단</u>
제16조(과게 기과이 혀즈)

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<u>실종</u> <u>아동등의</u> 조속한 발견·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.

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제16조의2(연차보고) ① 보건복지 부장관과 경찰청장은 <u>실종아동</u>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과 평가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전까 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.
- 1.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
- 2. <u>실종아동등과</u>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결과

<u>실종</u>
<u>자의</u>
법률 제20192호 실종아동등의
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
제16조의2(연차보고) ①
<u>실종자를</u>
<u>실종자를</u>
실종자를
<u>실종자를</u>
실종자를
실종자를

- 3.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생예방을 위 3. <u>실종자의</u> 한 연구·교육·홍보 현황 -----
- 4. <u>실종아동등에</u>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현황
- 5.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견을 위한수색 및 수사 통계
- 6.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현황
- 7. 실종아동등의 사례 분석
- 8. <u>실종아동등의</u>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 비스 제공 현황
- 9. 그 밖에 <u>실종아동등의</u> 발생 예방·발견·보호·지원 및 복귀에 필요한 사항
- ③ · ④ (생 략)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- 제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 -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 유 없이 <u>실종아동등을</u> 보호 한 자
 - 2.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<u>실종아동등을</u>

3. <u>실종자의</u>
4. <u>실종자에</u>
5. <u>실종자의</u>
6. <u>실종자의</u> 7. <u>실종자의</u> 8. <u>실종자의</u>
 9 <u>실종자의</u>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20412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제17조(벌칙)
 1 <u>실종자를</u>
2 <u>실종자를</u>

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
- 3.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<u>실종아동등</u>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
- 제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<u>2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~ 3. (생략)
- 4.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 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
 (생 략)
 - ② · ③ (생 략)

3
<u>실종자를</u>
제18조(벌칙)
<u>3년</u>
<u>3천만원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실종자를</u>
제19조(과태료) ①
<u>.</u>
1
<u>실종자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